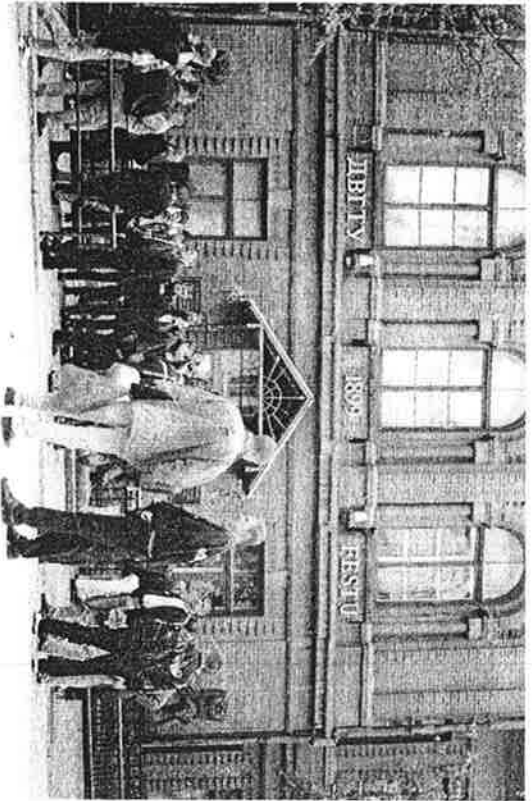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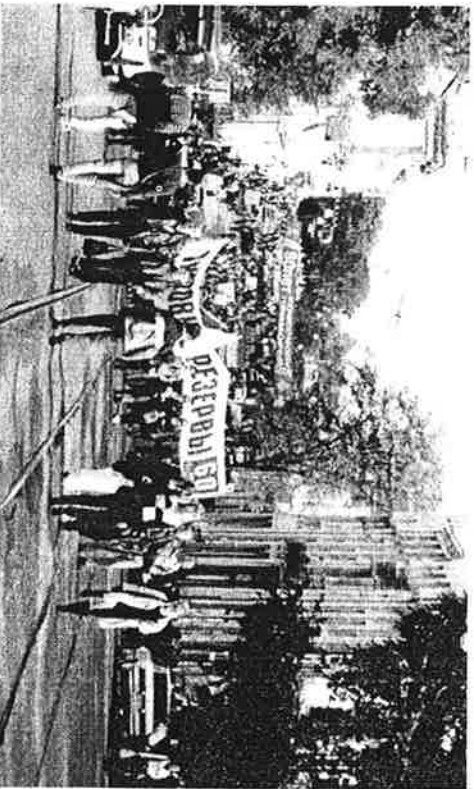


2012년

사4



동양역원 전경(연계 극동기술대학)



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블라디보스톡 학생들(2000. 10)

韓國 抗日民族運動과 中國

인쇄 1쇄 2001년 1월 5일
발행 2쇄 2001년 1월 10일

지은이 한국민족운동사학회

펴낸이 정진영

펴낸곳 國聖齋社
등록일 1987.12.21. 제17-270호

편집장 최순애(편집), 서경아, 이현아

기획자 김태범(편집), 한창남

총괄자 허일영(편집), 박아름

홍행자 김성달(편집), 황종기

물류자 정근웅(편집)

마케팅 정진영(편집), 김상진, 구보 다카히로

인쇄 박유복(편집), 안준철, 한선희

주소 서울시 강동구 암사 4동 452-20

Tel : 442-4626(대), 442-4623~4

Fax : 442-4625

www.kookhak.co.kr.

E-mail kookhak@komet.net

kookhak@orgio.net

ISBN 89-8206-540-7, 93910, 가 격 20,000원

•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 생략함



특집논문 / 중국지역의 항일민족운동	5
~齋 金秉祚와 大韓民國臨時政府 / 李炫熙	7
韓國光復軍 第1支隊 第3區隊의 성립과 변천 / 金光燾	31
소래 김중건과 항일민족운동 / 서평일	59
청산리전역 직전 반일무장단체의 근거지 이동에 대하여 / 손춘일	93
烏石 金赫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일고찰 / 김생기	123
「滿洲國」의 ‘民族協和’ 운동과 朝鮮人 / 윤취탁	143
東北抗日聯軍의 民族運動史的 性格 / 황민호	173
일반논문	215
한말·일제초기(1897~1915)목포일본인상업회의소의 구성원과 의결안건 / 박계상 ...	217
1930년대 초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의 民族運動史上的의 성격 / 박수현	249
조선에서의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과 실상(1942~1945) / 김인호	273
解放後 金昌淑의 政治活動 / 權奇勳	319
서평	355
임시정부 27년사의 인물과 이면사의 정리 / 申觀洪	336
역사탐방	367
블라디보스톡 구동대학교 한국어과 설립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다녀와서 / 박환	368



JOURNAL OF STUDIES ON KOREAN NATIONAL MOVEMENT

NO.26

December 2000

특집논문

- Lee, Hyun Hae
The study on reverend Kim Byung Jo and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7
- Kim, Kwang Jae
The Activities of the Third Company of the 1st Detachment in the KIA 31
- Suh, Kwaeng Il
So-Re Kim Chung Kun(笑來 金中健) and Anti-Japanese Nationalist Movement in Manchuria(1914~1933) 59
- Son, Chun Il
A Study on the Transfer of Basic Camp of Anti-Japanese Struggle Organization prior to ChungSanK(青山里)Bartle 93
- kim, saing kee
A study about OH SUKI(烏仁) Kim Hyak(金赫)'s life and working 123
- Yoon, Hwy tak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民族協和) of 'Manchukuo' and Koreans in Manchuria 143
- Hwang, Min Ho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ongBukHangIlYenKun(東北抗日聯軍) 173
- Park, Jae Sang
A Constituent and Bills of the Mok-po Japanese Chamber of commerce in the Late Chosun Dynasty and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Colony 217
- Park, Su Hyon
A Study on the Radical Characters of the Revolutionary Movement of Peasant Cooperation in the early 1930's 249
- Kim, In Ho
A Study on '2nd Production Expansion' of Chosun during Pacific wartime (1942~1945) 273
- Kwon, Gi Hun
After Liberation Kim Chang Suk's Political activities 319

III A study about OH SUK(吳石) Kim Hyuk(金赫)'s life and working

kim, saing kee

The field of independent movement history became the most major part in the modern Korean history because it contains the factor of overcoming Japanese colonial view of history and of strengthening security sense.

This paper will just show his general information about his way of independent movement. He was born in Yaeungin Kaengi-do on 6 October 1875, dedicated to independent movement, arrested by Japan and died for collective fatigue of prison on April 1939. Many part of his life was not herald. Although the number of the organization and party that he took part in was so many, the materials and data about him is just small. So we have a many difficulties in studying about him. But this paper tries to show his life and activity because his holy spirit and bravery toward Korean independence is so valuable. Many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have not been studied in the limitation of the materials. Especially the regrettable thing is that the memory about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is gradually disappeared. So we must concern about this part and take more intention to discover and study their activities. Though it is difficult to find out many materials and analyze perfectly about them, we must try to classify and discover materials that we can take. As we proceed these efforts, we can discover new materials and truth.

In this concept, I expect to proceed the study about many fighters for national independence and this paper is the one in this process.

This paper summarized his life and working because his life would show his bravery to strengthen independent movement.

「滿洲國」의 '民族協和' 運動과 朝鮮人

尹輝鐸*

- I. 머리말
- II. 治外法權의 撤廢與否와 朝鮮人의 位相
- III. 國家組織上의 民族構成과 朝鮮人
- IV. '民族協和' 運動과 朝鮮人의 自我認識
- V. 맺음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조빙연구원

1. 머리말

주지하듯이 토착적인 몽고족과 민족, 그리고 回族은 일찍부터 만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조 중기 이후에는 주로 화북 지역 출신의 한족이 滿洲(중국 東北地區)로 이주하기 시작했으며 뒤를 이어 조선인과 러시아인도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1905년 러일전쟁 이후에는 일본인도 만주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세기에 들어서 만주에는 상술한 6개의 주요 민족이 雜居하는 현상이 도출되었다. 「만주국」은 바로 그와 같은 민족 구성을 바탕으로 건립된 ‘複合民族國家’라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만주국」은 대외적인 국제 관계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해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동시에 일본의 ‘內面指導’를 받는 ‘괴뢰 국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내적인 민족 관계에서 볼 때, 「만주국」은 당시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적 모순이 집약된 ‘복합 민족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상술한 ‘괴뢰 국가’적 성격과 ‘복합 민족 국가’적 성격이 뒤엉켜서 형성된 「만주국」은,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 식민주의와 반식민주의, 봉건성과 근대성, 서구적 패권과 동양적(혹은 日本的) 패권 등을 둘러싸고 격동 속에 휘말려 있던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 혹은 세계 질서의 축소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위 ‘民族協和’는 ‘日滿一體’, ‘王道樂土’ 등과 더불어 「만주국」의 건국 이념이 되었다. ‘민족협화’란 「만주국」에 거주하는 자는 종족적인 우열을 초월해서 모두 평등하다는 전체 하에 한족·만주족·몽골

족·조선 민족·일본 민족이라는 ‘五族’이 일률적으로 공존공영을 도모해 나간다는 이념이다. 따라서 「만주국」의 ‘민족협화’ 운동은 다양한 민족 간의 이질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완화해서 각 민족 간의 대립 감정을 억제하고 각 민족으로 하여금 「만주국」의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하여 공적으로 「만주국」 식민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 이 이념은 제1차 세계대전 전후부터 중국에서 대두한 民族自治主義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만주에서의 反日·排日 운동의 기초인 민족 의식의 개념적 성격을 폄하하려는 것이었다.²⁾ 즉 각 민족의 개별성(혹은 특수성)을 주장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항한 민족주의나 민족 자결주의에 맞서기 위해, 일제는 민족의 개별성(혹은 특수성)보다도 각 민족이 협력해서 하나의 이상 국가를 건설하자는 ‘민족협화’를 제기했던 것이다.³⁾

따라서 ‘민족협화’의 성공 여부는 「만주국」의 식민 통치 기반의 강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민족협화’가 성과를 거둔다면 「만주국」 내의 항일 세력의 투쟁 명분은 약화될 것이고 그들의 인적·물적 자원, 즉 항일 투쟁에 필요한 병력·식량·무기·탄약·약품 등의 수급 역시 곤란해질 터이지만,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 수행에 따른 「滿洲國」민의 인적·물적 동원은 그만큼 수월해질 것이겠기 때문이다. 이외는 달리 만일 ‘민족협화’가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항일 세력의 투쟁 명분은 강화될 것이고 그들의 투쟁 여건은 재고될 터이지만, 「만주국」 내 각 민족 사이의 알력과 마찰이 증폭되면서 사회적 불안정이 야기됨은 물론이고 일본 민족 이외의 민족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식민 통치 기반이 약화될 것이겠기 때문이다.

상술한 것처럼 「만주국」 시기에는 ‘민족협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1) 참고로 1940년 「만주국」의 滿洲國勢調査에 의하면, 「만주국」의 총인구는 4,300만 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漢族이 3,700만 명(86%), 만주족이 270만 명(6%), 回族(이슬람族)이 200만 명(5%), 몽고족이 100만 명(2%), 조선인의

150만 명(3%), 일본인이 82만 명(2%), 러시아인이 7만 명이었다고 한다(滿洲國史編纂刊行會編, 『滿洲國史(各論)』, 東京, 滿蒙同胞援護會, 1971, 58쪽).

2) 山室信一, 『滿洲國の肖像』, 東京, 中央公論社, 1993, 131쪽.

3) 藤信三, 『滿洲移民の歴史社會學』, 京都, 行路社, 1995, 302쪽. 참고로 그러나 이 이론은 東亞協同體論과 결부되면서 기묘한 모순을 파생시키고 있었다. 즉 서양에 대해서는, 서양과는 다른 아시아라는 개별성을 주장하면서도, 아시아에 대해서는, 민족이라는 개별성보다도 ‘서양’에 대한 아시아라는 차원에서의 동일성과 형동성을 주장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었다(위의 책, 303쪽).

있었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협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각 민족 간의 생활상·권력상의 우열이나 이들 사이의 갈등·대립·충돌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도·출판하는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 결과 '만주국' 시기 각 민족 간의 위상을 분별하는 작업은 결코 쉽지가 않은 실정이다. 재만 조선인의 생활사나 여타 민족과의 관계, 그들의 정치적·민족적 위상 등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 '만주국' 수립 이전 시기로 머물러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만주국' 내 조선인의 생활상이나 여타 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민족적 위상 등을 밝힌 연구는 거의 없다.⁴⁾

한편 혈통상 조선 민족인 조선인은 일제의 조선 강점을 계기로 國籍上 '日本帝國의 臣民'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 만주로 이주한 조선인은 '만주국'의 수립과 治外法權의 철폐를 계기로 '만주국'의 국민'이 되었다. 그렇지만 '만주국'이 일제의 괴뢰 국가라는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리고 조선이나 '만주국' 모두 일제의 식민 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재만 조선인 일반은 사실상 '일본 제국의 신민'이라는 관념과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관념이 서로 交織된 이중의 國籍 의식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재만 조선인 자신이 '조선 민족'이라는 강한 자아 의식을 지니고 있을 때, 그들은 '조선 민족', '일본 제국의 신민',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4) 이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물로는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괴뢰국의 국가초과, 1952-1956』(동아대학교 출판부, 1999); 申奎燮, 『在滿朝鮮人の滿洲國觀および日本帝國像』(『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38집, 2000, 10, 總論書房)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중일전쟁(혹은 치외법권 철폐) 이전까지 재만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을 규명한 것이다. 후자는 주로 몇몇 조선인 '有關係者'의 인식을 중심으로 재만 조선인의 '만주국'관 및 '일본제국'상을 밝힌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재만 조선인은 2등 국민이었다."는 종래의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선인 자신의 인식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되고 있지 못하다. 후자는 일부 친일적 지식인 몇 명의 견해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들의 견해를 당시 재만 조선인 일반의 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는 '만주국' 시기 일부 조선인 지식인의 '국가관'을 최초로, 그리고 치밀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

3종의 정체 의식 속에서 정신적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더 나아가 전술했듯이, '만주국'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한족·만주족·몽골족·러시아인·일본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은 정치적인 국적 문제뿐만 아니라, 동일 국가 내부의 다양한 민족 간의 경쟁·嫉視·경멸·마찰·주도권 싸움 속에서 엄청난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해야 했다. 그 결과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 내 여타 민족보다도 민족 정체성에 더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본고의 연구 동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만주국'의 '민족협화' 운동과 그 속에서 피동적으로 위치지워졌던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과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차원에서, '만주국' 내의 여타 민족의 조선인에 대한 인식 및 평가, 조선인 자신의 자아 인식, '민족협화' 운동 속에서 조선인이 지니고 있는 위상, 그리고 이러한 제 측면에 입각한 '민족협화' 운동의 본질과 그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고에서는 '민족협화' 운동을 통해서 본 '만주국' 및 '大日本帝國'의 성격을 드러내 보려는 의도도 작용하고 있다.

II. 治外法權의 存廢와 朝鮮人の 位相

일반적으로 '만주국'의 수립과 더불어 치안 질서가 자리잡게 되면서 재만 조선인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중국 관민의 박해와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을 박해할 중국 관헌, 다시 말해 중국 동북 정권이 關內로 철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주국'이 건국 이상의 하나로 '민족협화'를 내걸면서 적어도 국적상으로는 일본 제국 臣民의 일원이었던 재만 조선인에게도 치외법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재만 조선인은 일본인과 더불어 '만주국'에서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비록 재만 조선인 가운데 일부는 일본의 조선 강점과 만주 침략에

맞서 항일 무장 투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나머지는 적어도 표면상 일본의 보호막에 둘러싸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과거 오랜 항일 운동의 역사로 인해, 특히 항일 遊擊區에 산재하고 있던 조선인 부락은 「민주국」에 의해서도 밀착 감시를 받았다. 그리하고 이들 부락의 조선인들은 때로는 항일 분자로 몰려 혹독한 탄압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민주국」의 '1935년도 秋冬季 治安肅正工作'을 계기로 집단부락에 수용된 조선인들은 기아·추위·질병·노역·부채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탄압과 감시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다.⁵⁾ 「민주국」이 '민족협화'를 주창할 때 재만 조선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계국의 신민이었다. 그러나 일제가 치인을 확립하려고 할 때 재만 조선인은 의심하고 감시해야 될 被統治 민족이었다.

하여튼 1937년 12월 「민주국」에서 일본인 및 조선인에 관한 치외법권이 철폐⁶⁾되기 이전까지, 재만 조선인 가운데 일부는 비록 일제에 의해 조국을 강탈당했지만, 「민주국」의 수립과 더불어 '민족협화'가 주창될 때, 「민주국」의 국적을 취득해서 「민주국」 국민이 되기를 바랐다고 한다. 이때 「민주국」, 국적의 취득은 계국 일본의 법률적 영역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계국 일본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⁷⁾ 더 나아가 그들은 완전한 '일본 계국의 臣民'으로서 '内地人'과 하등의 차별 없이 동일한 선상에서 남자는 물론 병역 의무를 부담하는 동시에 모든 국민적 권리를 획득하기를 바랐다고 한다.⁸⁾ 이것은 일본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인의 차별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었으나, 동시

「민주국」에서 일본인과 같은 지배 민족으로의 지위 상승까지를 내면적으로 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일제가 만든 「민주국」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며 중국인 자신들의 생존권을 침범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⁹⁾

또한 재만 조선인은 자신들에 대한 중국인의 압박을 완화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국」 정부에 다수의 조선인 관리를 임명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조선인 관리는 적었기 때문에 「민주국」의 '민족협화'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¹⁰⁾ 게다가 그들 중에는 '계국 신민'으로서의 지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된 자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한 이유로 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재만 조선인에 대한 인적 부속, 즉 차별적인 인식을 거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시 재만 조선인에 대한 재만 일본인의 인식을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국」의 日本系 관리 역시 조선인에 대해서는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¹¹⁾ 그밖에 계국 일본측이나 「민주국」의 대응 태도 역시 재만 조선인의 '계국 신민'으로서의 지위에 의문을 품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인 보호를 위해 興安省에 이주해서 水田 耕作에 종사하고 있던 조선인을 내쫓고 조선인의 흉안성 이주를 금지한 조치와, 일본인 土地商租權 소유자에게는 水利權을 부여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그 권한을 제한한 조치, 그리고 교육 문제 등에서의 조선인 차별 정책 등이 다.¹²⁾ 심지어 당시 「민주국」의 위정자들은 재만 조선인을 '동민'이나 불량 분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민주국」 정부의 재만 조선인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거나, 「민주국」의 '민족협화' 정책에 대해 비판적

5) 여기에 관해서는 尹梅燮, 『日帝下 滿洲國研究 - 抗日武裝闘争과 治安肅正工作』, 潮閣, 1996, 363~434쪽을 참조하라.

6) 치외법권 철폐의 배경·과정·의의·특징 등에 관해서는 畠島昭一,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第4章)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5)을 참조하라.

7) 趙悅, 『在滿朝鮮人の當面の要求』,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6호, 12~13쪽.

8) 金義用, 『朝鮮思想界回顧在滿朝鮮人指導問題』,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27호(1935. 5), 3~4쪽.

9) 申奎燮, 『在滿朝鮮人の滿洲國觀および日本帝國像』, 『朝鮮史研究會論文集』 제38집(2000. 10), 106쪽, 99쪽.

10) 林漢龍, 『滿洲移民と朝鮮人問題一考』,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2호(1934. 4), 118쪽.

11) 趙悅, 『在滿失業朝鮮人如何 附無料宿泊所宿者調』,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10호(1935. 12), 11~16쪽.

12) 申奎燮, 같은 글, 102쪽.

150 특집논문

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¹³⁾

한편 재만 조선인을 상징적으로 '內地人'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만주국」의 치외법권은 1937년 12월부로 폐지되었다. 치외법권의 철폐는 대외적으로 「만주국」이 독립국임을 과시함으로써 대외적인 신임을 얻으려는 것이었으며, 대내적으로는 침략 전쟁의 확대에 따른 「만주국」 내 각 민족 간의 괴열음을 최소화함으로써 식민 통치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치외법권의 철폐는 표면상 「만주국」이 독립 국가로서의 체도나 법체가 일단 완성된 동시에 관동군의 「內面指導」 체제가 확립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치외법권의 철폐는 영사관을 통한 일본 외무성 계통의 「만주국」에의 關係 여지를 매우 좁혀 놓은 반면에, 관동군의 일원적인 「만주국」 지배 체계의 심화를 가져왔다. 치외법권의 철폐는 적어도 제도상으로는 주로 「만주국」 내의 중국인·일본인·조선인의 사회 경제 생활상의 차별을 철폐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神祕 행정·교육·兵事 분야는 여전히 일본인의 손에 남겨 두어졌으며 재판권 역시 일본계는 여전히 특권을 지니는 심리를 받도록 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본계는 여전히 특권을 지니는 등 민족 간 차별이 잔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만주국」이 체도상으로는나 형식상으로는나 '독립상'을 관철시키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¹⁴⁾ 치외법권 철폐는, 여전히 핵심적인 특권을 지니게 된 일본인과는 달리, 재만 조선인에게는 정치적·법률적·민족적 계 위상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한 획기적인 일체의 정책적 전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치외법권이 철폐되기 전까지만 해도 재만 조선인은, 상징적인 의미이기는 하지만 일본 국적을 지닌 '天賦의 臣民'으로서 만주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종래의 치외법권은 중국인의 '불법 행위'로부터 재만 조선인을 보호하는 일정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어쩌면 재만 조선인을 중국인보다도 우월한 지배 민족으로서의 '內地人'(즉 일본인)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재만 조선인으로 하여금 '지신들이 중국인보다 우월

하다'는 잠재 의식을 불어넣어 주는 작용을 했다.¹⁵⁾ 그런데 치외법권의 철폐로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 국민으로서 「만주국」의 직접적인 행정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즉 치외법권의 철폐로 재만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 계국의 '鮮系 臣民'에서 「만주국」 국민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것은 재만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을 분출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다.¹⁶⁾

다음에 치외법권의 철폐로 조선인, 특히 오지에 거주하는 조선인 농민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 관할 주체와 행정적 성격도 달라지게 되었다. 치외법권이 철폐되기 전까지 재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일본 영사관이 행정권을 관할하고 있었으며, 영사관의 허부 기구로써 만주 각지에 조직된 朝鮮人民會와 영사관 경찰의 주체소가 그 역할을 보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치외법권의 철폐로 영사관 내의 朝鮮課가 폐지되었고 상술한 두 개의 허부 기관도 해체되었다. 그 결과 조선인, 특히 奧地에 있는 조선인 농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 기관은 朝鮮人金融會를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 대신 「만주국」의 행정은 中國人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반 행정으로 전화되어 오지의 조선인 농민은 실질적으로 「만주국」의 일반 행정으로부터 유리되었다.¹⁷⁾ 그 결과 이들 조선인 농민에 대한 행정적 침투 문제가 추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만주국」에서는 임시방편으로 滿洲帝國協和會(이하에서는 協和會라 약칭) 산하에 「朝鮮人分會」 혹은 「朝鮮人輔導部」, 「朝鮮人工作幹事會」 등의 명칭을 지닌 허부 기구를 만들어 조선인 농민에 대한 행정적 강악을 시도하였다.¹⁸⁾

15) 田中武雄 朝鮮總督府外事課長, 「在滿朝鮮人同胞に對す」,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23호(1935. 1), 19쪽(여기에서는 申奎燮 같은 글, 102~103쪽에서 재인용).

16) 申奎燮, 같은 글, 106쪽.

17) 참고로 治外法權撤廢 전까지 朝鮮人民會의 앞선으로 간편하게 되던 在滿 50만 조선인 漏籍者의 就籍手續은, 치외법권의 철폐로 말미암아 재만 조선인은 그 수속에 필요한 領事의 증명서와 거주증명서를 직접 받아서 하게 되었다. 그런데 치외법권 철폐에 따라 領事館이 폐쇄된 곳이 많은 관계로 재만 조선인이 증명서를 얻는데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고 한다(『在滿朝鮮人漏籍者の就籍手續의 簡便化』, 『滿鮮日報』 1940년 6월 6일자, 7면).

13) 林漢龍, 같은 글, 2~9쪽.

14) 副島昭一,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 같은 논문집 『滿洲國の研究』, 155쪽.

그렇다면 '민족협화' 운동과 관련하여서 재만 조선인의 위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고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이 문제는 당시 치외법권 철폐에 따른 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관계 기관 회의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즉 이 회의록에 의하면, 관계 기관에서는 치외법권 철폐 후에도 재만 일본인에게는 지도적인 역할을 부여할 것을 분명히 한 반면에, 같은 '일본 제국의 신민인' 재만 조선인에게는 일본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할 것을 명확히 밝혔다. 즉 재만 조선인을 재만 일본인과 같이 특별 취급한다면, 「만주국」 내 다른 민족과의 알력이 야기되어 '민족협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것이다.¹⁹⁾ 이러한 방침은 1936년 8월 5일 關東軍司令部에 의해 제정된 「在滿朝鮮人指導要綱」에서도, 재만 조선인으로 하여금 「만주국」의 중요한 구성분자임을 자각시켜 「만주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케 하고 치외법권 철폐 이후에도 '타민족과 協和融合'해서 균등한 조건 하에' 발전하도록 지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²⁰⁾

상술한 것처럼 치외법권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족적 특권을 보유한 재만 일본인과 달리, 재만 조선인은 그들에게 상징적인 특권으로 부여되었던 치외법권을 상실하면서 '민족협화'라는 그들에 가려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국적상 명실공히 「만주국」의 국민'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의 정립을 요구받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만주국」의 국민'으로서 자각하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기에는 모든 여건이 너무나 열악했다. 그들은 「만주국」의 중추적인 조직에서 미미한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18) 『鮮系國民의 諸問題-康德六年度の 批判的 回顧上』, 『滿鮮日報』 1939년 12월 28일자, 1면 및 金子弘, 『金融會의 精神-滿洲朝鮮農民의 特殊事情』, 『滿鮮日報』 1940년 7월 29일자, 1면 참조.

19) 『治外法權撤廢現地委員會決定要綱說明關於滿事務局關係各省事務官及現地主任者會議會議錄』, 『大野線-一柳關係文書』, 日本國立圖書館憲政資料室 所藏(여기에서는 申奎燮, 같은 글, 103쪽에서 재인용).

20) 滿洲帝國協和會中央本部調査部, 『國內に於ける鮮系國民實態』, 1943, 101쪽.

III. 國家組織上의 民族構成과 朝鮮人

한편 제4장에서 후술하겠지만, 당시 재만 조선인이 「만주국」의 소위 '민족협화' 운동에서 소외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된 데에는, 상술한 조선인 자체의 생활상의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지만, 「만주국」 자체의 식민 전라 차원에서의 민족적·행정적 정책이나 제도상의 한계에서 야기된 측면도 있었다. 즉 「만주국」의 소수 민족으로는 日·鮮·蒙·白系露人·오로촌 등이 있었지만, 日本系는 틀에서 소수이나 實 則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방면에서는 다른 민족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만주국」의 통치 체계를 살펴보면, 國制上으로는 입헌 공화국을 채택하고 민족주의를 내걸면서도 실제로는 國務院總務廳을 중심으로 하는 寡頭的 獨裁 체계에 의해 강력한 정치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정치적 지배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국정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던 총무청은 總務長官을 비롯해서 핵심 부서가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국정상의 機密·인사·재정 등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처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만주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통치 의사를 벗어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통치의 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만주국」 통치의 壘臺라고 할 수 있던 관동군은, 그것을 방지하고 일본의 통치 의사를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에 顧問·參議라는, 서로 다른 권능을 지닌 일본인을 배치함으로써 「만주국」에 대한 內面指導를 행하고 있었다. 지방 정부 역시 각 省長에는 중국계가 임명되었지만, 각 성에 설치된 총무청의 청장에는 대부분 일본계가 임명되었고, 縣에도 縣長에는 대부분 중국계가 임명되었지만 縣參事官(후에 副縣長)·經理指導官·產業指導官·警務指導官 등에는 일본계가 임명되어, 이들이 지방 정부의 정치·경제·경찰 권능을 장악하고 있었다.²¹⁾

<표 1> 「만주국」 관료의 기관별 · 민족별 점유 상황

中央機關	宮內府	參議院	立法院	國務院	民政部	外交部	軍政部	財政部	實業部	交通部	司法部	文教部	蒙政部	農林部	監察院	最高法院	總檢察長	監獄院	合計
총수	7	108	18	22	492	1148	144	222	1406	341	383	132	100	72	35	33	33	73	4839
중	6	96	9	18	90	610	76	124	773	138	344	66	60	7	3	3	3	31	2474
일	1	12	9	4	402	500	68	87	633	186	239	66	40	35	#32	#30	42	42	2386
蒙	-	-	-	-	-	-	-	11	-	-	-	-	-	30	-	-	-	-	41
露	-	-	-	-	-	-	-	38	-	-	-	-	-	-	-	-	-	-	38
日系	14.3	11.1	50.0	18.1	81.7	43.6	47.2	39.2	49.0	34.1	41.0	50.0	40.0	48.6	91.4	90.9	37.5		48.3

<출전> 『偽滿洲國官吏國籍統計表』, 1935, 출판자 등 미상, 上海 復旦大學 소장(여기에서는 山室信一, 『滿洲國統治過程論』(第3章),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114쪽에서 재인용).

<비고> #는 원래 30으로, ##는 원래 40으로 잘못 표기된 것을 함께와 日本系の 점유 비율 등을 대비해서 바로잡았다. #는 원본계의 점유율을 말한다.

상술한 것처럼 일본계가 「만주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관리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잘 입증되고 있다. <표 1>에 의하면, 「만주국」 중앙 기관의 관리 가운데 일본계가 대체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고 특히 권력의 중추부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 · 최고 법원 · 최고 검찰청의 경우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 기관 관리의 경우에도 전체 관리 수 7,100명 가운데 중국계는 3,517명(49.5%), 일본계는 3,249명(45.8%), 몽고계는 282명(4.0%), 러시아계는 14명(0.2%)이었다.²²⁾ 물론 일본계 관리 수에는 조선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겠지만, 1935년 당시 일본계가 「만주국」 전체 인구 3,286만 9,054명 가운데 7만 6,429명(약 0.2%)²³⁾에 불과했음을 고려해 볼 때, 일본계의 점유율은 과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만주국」에서의 조선인의 정치적 위상을 살펴보면, 우선 당

21) 이 분야에 대해서는 山室信一, 『滿洲國統治過程論』(第3章),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및 姜念東 外, 『偽滿洲國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1980, 156~182쪽을 참조하라.

22) 『偽滿洲國官吏國籍統計表』, 1935, 출판자 등 미상, 上海 復旦大學 소장(여기에서는 山室信一, 『滿洲國統治過程論』(第3章),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115쪽에서 재인용).

<표 2> 間島省 관리의 민족 집단별 인구 현황(1935년 말)

部別	조선인	일본인	만주국인	계
省公署	24	27	23	74
縣公署	4	18	5	27
警察廳	2	11	6	19
합계(점유율)	30(25.0)	56(46.7)	34(28.3)	120(100.0)
間島省 총인구	452,246(73.6)	8,461(1.4)	153,387(25.0)	614,094(100.0)

<출전> 관리수는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編 『滿洲國官吏錄』, 新京, 同總務廳, 1936, 341~345쪽에서; 총인구는 滿洲帝國 民政部 編 『滿洲帝國民政部統計年報』, 新京, 同民政部, 1936, 32~33쪽에서 인용.

시 조선인 관리 수는 매우 적었다. 실제로 1935년 말 통계에 의하면, 「만주국」의 전체 인구 약 3,287만 여명 가운데 중국계는 3,205만 여명(97.5%), 일본계는 약 7만 6천 여명(0.2%), 조선계는 약 66만 2천 여명(2.0%)이었는데,²⁴⁾ 「만주국」의 전체 관리 인원수 가운데 「滿洲國」(주로 중국계를 지칭함) 관리 수는 22만 384명(전체 재만 중국인의 0.7%), 일본계는 1만 7,431명(전체 재만 일본인의 13.8%)이었는데 비해 조선인 관리 수는 1만 1,898명(전체 재만 조선인의 1.6%)에 불과했다.²⁵⁾ 대다수 조선인들이 모여 살던 간도성에서도 조선인 관리의 25%에 불과했으며(<표 2> 참조),²⁶⁾ 전체 주민의 7할이 조선인인 간도성에서조차 省長 · 縣長 · 경찰청장 등의 직책은 모두 중국인에게 주어졌다. 상징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조선인들은 몽골인들이 누린 '지울성' 즉 중앙 정부의 몽고인 담당 부서인 蒙政府의 大臣이나, 몽고인의 거주 지역인 興安省의 성장직을 몽고인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따위를 얻지도 못했다.²⁷⁾

23) 大連商工會議所 編 『滿洲經濟統計年報』(1935년판) 下編, 1935, 1쪽.

24) 大連商工會議所 編 『滿洲經濟統計年報』(昭和 10年) 下編, 1935, 1쪽.

25) 滿洲帝國 民政部 編 『滿洲帝國民政部統計年報』, 新京, 同民政部, 1936, 46쪽;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 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 동아대학교출판부, 1999, 171쪽.

26) 滿洲國 國務院 總務廳 編 『滿洲國官吏錄』, 新京, 同總務廳, 1936, 341~45쪽; 같은 책,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171쪽.

27) 같은 책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171쪽.

<표 3> 「만주국」 경찰의 민족별·계급별 연령(1937년 9월) (단위: 명, %)

구분	警正		警佐		巡官		警長		警士	
	일계	중계	일계	중계	일계	중계	일계	중계	일계	중계
일본계	50	160	358	1,659	805	4,738	1,648	9,620	650	71,673
중국계	31.3	68.7	17.8	82.2	14.5	85.5	14.6	85.4	0.9	90.1

<출전> 『滿洲年鑑(康德五年版)』, 新京, 滿洲國日新報社, 1938, 81쪽.

게다가 일반 행정 최말단의 세포 조직이요 기본 단위인 村의 경우, 村民의 절대 다수가 中國系인 관계로 村長을 위시하여 村吏員·屯長·牌長의 거의 전부가 중국계였다. 당시 조선계도 동일한 村民이었지만 언어·문자·풍속·습관·풍습을 달리하는 관계로 사실상 村의 행정 조직에서 배제되었다.²⁸⁾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법규·법령이나 국가 건설의 趣旨 등에 대한 인식을 결여하게 되었다. 이처럼 「만주국」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재만 조선인에게서 의무를 이행해야겠다는 의식이 솟아날 리가 없었다. 그 당연한 결과로서 재만 조선인은 이단시되었고 '하층'은 존재로 비추어지게 되었다.

경찰 행정에서도 주민의 절대 다수가 중국계인 관계로 경찰관의 대다수가 중국계였다.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계는 최고위직인 警正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비해, 중국계는 警士 이하 하위직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계 가운데 조선계는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1940년 당시 首都警察廳에서 朝鮮系警察官으로 최고급자는 警衛에 불과했다²⁹⁾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계로서 고위급 경찰관직을 수행

28) 참고로 『縣公署・興農合作社・新都市內 各警察官派出所・全滿 各主要警・各特殊會社 등은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朝鮮系의 接觸面이 상당히 넓고 깊은데 지식 정도가 저급한 조선계들은 언어 소통 관계 등으로 많은 不利不便을 맛보고 있었다고 한다(『各機關에 朝鮮系職員配置의 教育機構補充을 討議-首都鐵林分會主任 協和懇談會記錄(一)』, 『滿鮮日報』 1940년 6월 3일자, 2면).

29) 『各機關에 朝鮮系職員配置의 教育機構補充을 討議-首都鐵林分會主任 協和懇談會記錄(一)』, 『滿鮮日報』 1940년 6월 3일자, 2면.

<표 4> 「만주국」 사법부 직원의 민족별·직급별 연령(1935년 말)

구분	大判	司長	理事官	參事官	事務官	秘書官	技佐	衛生官	屬官	技士	일계
중국계	1	1	4	-	5	-	-	-	41	-	52
일본계	-	3	7	5	8	1	1	1	30	1	57
일계	1	4	11	5	13	1	1	1	71	1	109

<출전> 『滿洲國現勢(康德3年版)』, 新京, 滿洲國通信社, 1936, 109쪽.

하고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상술한 것처럼 일반 민중들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많은 하위직 경찰관의 대부분이 중국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인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더 겪고 있었다. 즉 중국계 경찰들은 조선의 언어와 풍습을 몰랐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사정애 어두웠고, 어떤 때에는 도리어 치외법권 철폐 전에 품고 있었던 민족적 대립 감정을 가지고 조선인 부락민에게 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다.³⁰⁾ 사법 분야의 경우에도,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고위직은 일본계의 비중이 높았지만, 중국계는 사법부 대상을 비롯해서 이사관·사무관 등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만주국」 司法部에서는 중국계의 간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司法部와 刑務官에 대해 유학 제도를 도입했다. 사법관에 대해서는 유능한 자를 선발해서 1년간 일본 司法部에 위탁 교육을 시켰고, 형무관에 대해서는 4개월 간 日本刑務協會·刑務官訓練所·刑務所 등에서 실습을 시켰다.³¹⁾ 이렇듯이 사법 분야에서도 조선인은 나름대로의 위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타 문화적 방면에서도 신문·연극·영화·라디오의 거의 전부가 중국어 혹은 중국인을 主體로 하여 발행되었거나 작성되었다.³²⁾

결국 재만 조선인은 인구 구성에서뿐만 아니라 「만주국」의 중추 기구인

談會記錄(一)』, 『滿鮮日報』 1940년 6월 5일자, 2면.

30) 韓昌雲, 「少數民族輔導의 必要性(上)」, 『滿鮮日報』 1940년 1월 5일자, 1면 참조.

31) 副島昭一, 「滿洲國統治と治外法權撤廢(第4章) 山本有造 編, 『滿洲國の研究』,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3, 143쪽.

32) 韓昌雲, 같은 글 「少數民族輔導의 必要性(上)」, 1쪽 참조.

행정·사법·경찰 조직 내에서도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문화 방면에서조차도 주도적인 인물이나 매개 언어가 일본인(아) 혹은 중국인(아)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주변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재만 조선인들이 절감하고 있던 것은 좌절감이나 실망감 혹은 자기 비하의식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진 것은 「만주국」 내 타민족으로부터의 멸시와 경멸이었다.

IV. '民族協和' 運動과 朝鮮人の 自我認識

한편 「만주국」 초기에 일부 조선인들은 '일본 신민'이라는 특권, 즉 치외법권을 지니게 된 점에 도취해서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서 自重과 謙讓을 잃고 오만불손하게 행동함으로써 「만주국」 내 다른 민족과의 사이에 분개를 야기해서 비난을 받거나 기피 대상으로 된 일이 많기도 했다.³³⁾ 이러한 조선인의 행태가 빌미가 되어서인지, 하여튼 치외법권의 철폐를 계기로 유독 조선인, 특히 興地に 산재해 있던 조선인 농민에 대한 소위 '輔導' 문제가 「만주국」 행정의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재만 조선인에 대해서만 유독 '보도' 문제가 제기된 것은, 상술한 조선인 자신의 처신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었겠지만, 「만주국」의 '민족협화' 정책의 모순에서 빚어진 측면도 있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재만 조선인에 대한 관계 당국의 차별적 태도 및 정책은, 조선인들을 「만주국」의 '주변적 존재' 혹은 '하찮고 귀찮은 존재'로 만들어 결국 그들로 하여금 「만주국」의 국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민족협화' 운동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한 측면도

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치외법권의 철폐를 계기로 조선인의 '보도' 문제가 제기된 점과 관련하여, 「만주국」의 '민족협화' 운동에서 차지하고 있던 조선인의 위상이 어떠했었는지를 살펴보자. 이것은 당시의 조선인 신문에 투영된 그들의 자아 인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사료 1> 複合民族國家를 구성한 日滿鮮蒙露의 각 민족 중에서 하필 조선인의 輔導가 論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선인은 울지 못한 일만 하고는 注意와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아니 되는 “위치안혼 존재”로만 되어 있는 듯한 不快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 輔導問題라는 글자가 되어 신문이나 雜誌에 나타나면은 일부 誠意와 理解가 없는 이들은 내용은 읽기도 전에 “과연 조선인은 尙殘存”하고 되려 在滿朝鮮人에게 대한 인식을 그릇치게 할 것 같타야 근심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³⁴⁾

<사료 2> 行政的 내지 敎化的으로 만주국의 諸施策으로부터 隔離되어 있는 滿洲朝鮮人에 대하여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여하간의 輔導가 필요하다. 굳은도 만주조선인 보도에 있어서 新京을 模型地로 하여 마침내 全滿에 파급되어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소위 “自淨運動”이다. 이 운동은 “自淨”이란 말이 주는 語感이 일종 卑屈한 것을 聯想케 하고 또 그 운동의 내용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며 그 목표하는 바가 일반 人間性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면 하필 조선인에만 限한 것이나 하는 의미로 일부의 異議가 컸는 것은 아니나…… 여하간 이 자정운동은 民族雜居生活에 있어서 유달리 나타내지는 조선인의 모든 不名譽한 것을 수정하여……³⁵⁾

즉 「만주국」이 日·漢·滿·鮮·蒙·露의 다수 민족으로 구성된 복합 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조선인만이 '輔導'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33) 田中武雄朝鮮總督府外事課長, 「在滿朝鮮人同胞に寄す」, 『全滿朝鮮人民會聯合會會報』 제25호(1935. 1), 19쪽(여기에서는 申奎燮 같은 글, 102~103쪽에서 재인용).

34) 金榮秀, 「血緣的一體完成國國家의 興亡을 거치히러」, 『滿鮮日報』 1940년 1월 1일자, 1면.

35) 「鮮系國民의 諸問題—康德六年度の 批別的 回顧(中)」, 『滿鮮日報』 1939년 12월 29일자, 1면.

‘自淨運動’이 요구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사료 1> (사료 2>). 이처럼 조선인들이 ‘보도’ 및 ‘가정’의 대상으로 된 배경은, 조선인은 항상 용지 못한 일만 하고 늘 주의를 교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찮은 존재’로만 비추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제안 조선인의 자아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사료 1>).

<사료 3> 종래 조선인의 만주에 건너오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라 하겠지만 과거와 현재에서 이것을 본다면 정치적인 동기와 생활적인 동기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님니다. 정치적인 동기는 日韓合併에 대한 시대의적인 불만(?) 때문에 不平(?)을 품고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건너온 이들이 대부분이 그것이고, 그 다음에는 단순히 생활적 동기 즉 농사를 지어서 평인하게 생활을 하여 가겠다는지 돈을 버러가기고 역시 생활의 안정을 도모 하겠다는지 하는 그것인데…… 前者는…… 일본제국 신민이라는 의식이 확실치 못하며 滿洲國國民으로서도 특별한 恩惠를 입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者外에는 소위 滿洲國國民의 국가의식의 정도일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후자는…… 만주에 와서는 돈을 버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나 돈벌이하려는 데는 수단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하여 국경지방에 안처서 密輸業을 하여 먹고사는 사람도 만듭니다.…… 전자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 제국의 行政과 격리되어 있든지 까닭에 일본 정치의 은혜와 실상을 모르고 따라서 建國事業에 대하여도 당초에는 적극적인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어느 때에 있서는 도로히 大勢에 逆行하여 무모한 반항까지 하였고 후자의 대부분은 그 가진 바 경향 때문에 만주국의 恩惠에게 憤恨도 밧고 土著國民인 만주인에게도 恩惠를 초래하는 일도 있습니다.…… 일부 識見 眼는 指導者階級에서도 “조선인은 귀천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36

<사료 4> 근일 新京特別市の 各區 懇談會에 나타난 話題內容을 종합하여 보면 어느 區임을 막론하고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조선인의 8할 이상이 町會費를 납입치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선인이 公民으로서 공

공생활을 하여 나갈 소질이 없다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本報에서 사실을 조사하여본 결과에 의하면 靖和比 不納이라는 것은 일부분의 무책임한 鮮系市民 때문에 이 비난의 이유는 확실히 제공되어 있는 것이 판명되었다. 國都鮮系住民의 대부분이 확실한 생활토대 위에 서지 못한 浮動層인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의무수행에까지 馳念할 精神的餘力이 없다든지 또는 移動이 頻기 때문에 거주장소의 변동이 만해서 町會費를 버로서 소외되기 쉬운 처지에 있다든지 또는 居住不安定에 의한 届出不能 이라든가 하는 이유…… 37

그렇다면 제안 조선인이 ‘하찮고 갈잡은 존재’로 비쳐지고 있다는 인식은 어디에서 배태되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사료 3>을 살펴보면, 우선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한 불만 등의 정치적 동기로 入滿한 사람들은 「만주국」 국민으로서의 의식이 없었고 일본 정치의 은혜(?)와 실상을 모르고 있었으며 건국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성의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무모한 반항(?)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다음에 생활의 안정이나 돈벌이 같은 경제적 동기로 일만한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拙穢的 기분에서 밀수업 등에 종사하면서 「만주국」 관련 의 증오를 받거나 토착 중국인들로부터 恩惠를 시는 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안 조선인은 「만주국」의 지도 계층으로부터 ‘귀찮은 존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료 4>에 의하면, 출가적 기분에 사로잡혀 있던 제안 조선인 대부분은 확실한 생활 토대 위에 서지 못한 부동층이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의무 수행에까지 몰두할 정신적 역력이 없었거나 이동이 심해서 町會 회원으로서 소외되기 쉬운 처지에 있었고 거주 불안정에 의해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町會費의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제안 조선인은 다른 민족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안 조선인에게는 출가적 기분의 일소를 요구받고 있었던

36) 金榮秀, 『血緣的 一體完成 國家와 興亡을 거치하라』, 『滿鮮日報』 1940년 1월 1일자, 1면.

37) 『公民의 義務-町會費를 納入(社說)』, 『滿鮮日報』 1940년 5월 1일자, 1면.

것이다.³⁸⁾

<사료 5> 생활건설의 방법은 設計와 그 實踐에 있다. 설계 업는 생활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資本을 가지지 못하였고 技術을 가지지 못하였고 土地를 가지지 못하였다. 소위 생산수단이란 것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였으니 무슨 정밀한 설계나 外界現象의 認識이니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³⁹⁾

<사료 6> 우리 牛島人이 민족에 있어서 물론 先進內地人에게 指導를 받고 있으며 先住滿洲人에게 신체를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 안에 있어서서는 한 가지 잘못이 있셔도 더뎌기 쉬움고 서로 관용할 수 있지만 複合民族으로 성립된 우리 민족에 있어서서는 우리 한 사람의 一舉手一投足이 즉시 牛島全體를 評價하고 반영하는 목표가 되어 한 사람의 不良이……⁴⁰⁾

<사료 7> 安東市聯滿洲帝國協和會 安동시연합협의회는 오후 1시 반부터 속개되었다.…… 중대 鮮系 기타 소수민족은 日滿系와 기타 다수 민족과 갖지 협회운동이 활발치 못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협회회는…… 中田씨 발언을 구하여 日滿鮮系를 구분하지 말고 민족을 차별치 말고 나아가면 협회회가 발달되지 안겠느냐고 말하였다. 조선민족이나 소수민족이나 言辭가 만어지고 제국신민의 하나인 鮮系로서 너머 민족이라는 인사가 만히지나 회의는 미묘한 공기가 있는 듯하였다.⁴¹⁾

<사료 8> 민족은…… 협회회기구를 직접 대중의 實效機關이 되기에 는 아직 요원한 將來의 感이 없지 않다. 금년 全聯에 대표로 출석한 어느 日系の 評을 듣건대, 日 全聯은 ‘陳情會’, ‘物乞會’라고 과거 7년간 實績에 證하여 協和工作이란 指導民族 또는 다수민족을 상대로 하기 쉬운 까닭은

38) 『鮮系國民의 公民生活(社說)』, 『滿鮮日報』 1940년 4월 9일자, 1면.

39) 濱江稅務監督事務所 李東鵬, 『回顧의 展望—滿洲 우리들의 生活(16), 優秀性을 再認識하자(下)』, 『滿鮮日報』 1940년 4월 5일자, 2면.

40) 『滿洲의 牛島先靈諸賢에게 哀悼(社說)』, 『滿鮮日報』 1940년 4월 11일자, 1면.

41) 『深刻한 朝鮮人의 住宅難』, 『滿鮮日報』 1940년 3월 29일자, 3면.

로 소수민족은 此所謂上 下等 不及으로 협회회 待遇를 받기 어려웠음이 사실이다. 협회회는 전체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실 “協和”란 字句에 拘限되어 민족별 會社이면 무엇이든 지도원리에 背馳된다고 생각하여 왔다. 그 결과 는 有口無足の 현실을 짓고 만 것이다.…… 예를 들면 협회회의 常用語는 日滿 兩語가 되어있다. 일어 滿語를 解得할 수 없는 여타 민족은 소위 奉師 丹靑구경이다. 複合民族國家로서 어느 정도의 불평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은 指導工作에까지 그 필요는 없는 것이다.…… 소수민족의 하나인 鮮系 輔導問題도 이 모순을 제거하기 전에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⁴²⁾

<사료 9> 그러면 民族協和의 國是를 수행하고 있는 我滿洲國에 있어서 그 구성분자가 되고 있는 조선인의 책무는 어떠한 것인가? 數에 있어서 절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漢滿人에 비하여 중심적인 존재가 못되고 日本國民으로서의 一部分임은 틀림없지마는 實에 있어서 그 일반적 民度の 低位로 인하여 內地人과 役개를 겨누고 있지 못한 조선인은 量에 있어서나 實에 있어서나 자칫하면 중심에서 疏外되기 쉬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民族協和運動에 있어서 鮮系는 그저 “남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하지.” 하고 극히 저포 지기적인 소극적인 견해를 가지는 사람이 만히 있는 것이 가리울 수 없는 사실이다. 협회회의 직무에 중사하는 鮮系나 指導級人物들을 내놓코는 대체로 建國理想인 民族協和의 대의명분에 방임하여야 구태의연한 出稼限性에서 국가목적을 위한 아모런 自覺도 熱意도 없는 사람이 만흔 것을 도처에서 본다.⁴³⁾

<사료 10> 其外 協和運動及 國國民運動에서도…… 주민의 절대다수를 占하는…… 민족을 주제로 한 會運動이 행하여질 것은 당연하고…… 役員 중에 소수의 鮮系가 들었다 하여도 氣를 퍼지 못하는 感이 있는 彼等 鮮系가 甚의 多數役員을 향하여 강렬히 의견주장을 할 수 있을까. 설명 할 수 있다 한들 인어가 許할 수 있을까. 또 현재의 分會役員으로 그 의견을 채택 하고 혹은 鮮系의 특수사정을 고려한 會運動을 진전시키려는 會精神의 體得者가 몇머치나 될까. 동시에 인간은 기계가 아닌 이상 자연 그러한 흥미

42) 夢庭生, 『鮮系輔導의 現實性—우선 民族別輔導機構를 整備하라』, 『滿鮮日報』 1940년 1월 5일자, 2면.

43) 『民族協和에 在한 朝鮮人의 實務(社說)』, 『滿鮮日報』 1940년 5월 25일자, 1면.

를 느낄 수 없는 畝畝 등에 출석하는 것을 실현하고 畝畝에서 낙오자로 되고 국민운동에서 제거되어 드디어는 귀천케 생각케 되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이상 運轉하는 運轉한 민주국의 현상이며 소수민족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⁴⁴⁾

<사료 11> 그들의 (協和運動에 대한) 認識程度는 엇더한가

농민이란 대개가 무식계급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기 집에 온 편지를 이 곳저곳으로 알 만한 사람을 차져다니며 보이는 터이니 新聞雜誌 하나 볼 만한 筆力을 가진 사람은 한 부락에서 한 두 명을 주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시국에 대한 눈이 머물리 업고 두뇌가 열릴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가 아니면 曠遠한 野外에 거주하기 때문에 통신연락이 불충분하여 紙上輿圖는 바랄 수 없을뿐더러 도시에서 웨치는 소리가 그들의 귀에 들려질 기회도 그리 업다. 그러니까 그들의 두는 곳을 항상 차져다니면서 가르쳐 주는 지도지도 업다. 그러니 그들의 두뇌가 깨명할 수 있스랴. 민주국을 창건한 지 9개 風霜을 지냈지만 그들 중에 建國精神을 대채라도 깨달을 만한 자가 과연 몇사람이나 되는고? 협화회에 서는 아무리 精神普及 認識促進을 위한 운동을 철저히 한다고 하나 이 거리에서 소리쳐지 거리에 멈출 뿐이오 輿地農民의 귀에 닿는 것 갖지 안타. 나는 만주에서 數十縣의 조선농민을 상종하였스나 그들은 모다 건국정신에 대한 인식이 업는 듯하며, 민주인 농민은 민족협화관 소리를 듣지도 못한 사람이 태반이다.⁴⁵⁾

결국 「민주국」의 國魂인 '민족협화' 운동과 관련지어 볼 때, 재만 조선인은 수적으로 절대 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漢·滿人に 비하여야 중심적인 존재가 못 되었다. 게다가 그들은 치외법권의 첩예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제국의 신민'임에는 틀림없었지만은 질적으로 특히 자본·기술·토지 등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인과 어깨를 겨누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사료 5>, <사료 9> 이러한 상황에서 재만 조선인은 "일본인에게 지도를 받고

있는 동시에 先任 중국인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인식 하에 다른 민족의 눈치나 살피고 있었다.<사료 6>, 게다가 재만 조선인은 소수 민족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고 일본제와 중국제는 다수 민족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소수 민족의 위상을 지니고 있던 재만 조선인은, 다수 민족의 위상을 지니고 있던 일본제 및 중국제와 달리, 協和會運動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게다가 회의 분위기가 미묘할 정도로 조선인은 소수 민족이라 하여, 혹은 제국 신민의 嫡統인 일본제와는 다른 민족이라 하여 차별적인 언사를 듣고 있었다.<사료 7>. 더 나아가 협화회가 조직되어 활동한 이래 協和工作, 즉 식민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재만 공작은 주로 지배 민족인 일본인과 다수 민족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협화회의 상용어 역시 일본어와 중국어였기 때문에, 이들 양 민족은 「민주국」 시기에 비중 있게 취급되어 혜택을 누린 반면에, 소수 민족인 조선인은 「민주국」의 통치 행위상에서 파드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채 집중적인 輔導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사료 8>). 결국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만주로 흘러 들어온 재만 조선인은 또대기 기분을 일소하지 못한 채 소외되기 쉬운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소위 '민족협화' 운동에 대해서 재만 조선인은 협화회에 종사하는 일부 조선제를 제외하고 대부분 그저 "남하는 대로 따라하기나 하지." 하는 극히 자포자기적인 심정으로 임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사료 9>).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 지배 민족과 다수 민족의 틀바구니에 기여 기를 쓰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져 있던 재만 조선인은 '민족협화' 운동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없게 되면서 畝畝 등에 출석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재만 조선인은 결국 '민족협화' 운동에서 낙오자로 전락되었고 국민운동에서 배제되어 마침내 '귀찮은 존재로 낙인찍혀 버렸던 것이다.<사료 10>). 조선 사람만이 유독 말쑥꾸미기로 낙인찍혀⁴⁶⁾

44) 韓昌雲, 『少數民族輔導의 必要性(下)』, 『滿鮮日報』, 1940년 1월 7일자, 2면.

45) 吉甲森, 『農村民族協和問題—특히 鮮農對滿農關係의 考察』, 『滿鮮日報』, 1940년 8월 30일자, 4면.

46) 「回顧와 展望(一)—滿洲 우리의 生活」, 『滿鮮日報』, 1940년 5월 7일자, 2면.

〈표 5〉 민족별 協和會 會員數 및 人口現況(1939년, 1940년)

지역별	민족별					합계		
	일본계	중국계	조선계	몽골계	러시아계		기타	
인구	124,108人	1,023,979	48,796	5,965	2,961	478	1,204,980	
외원	%	10.3%	85.0	4.0	0.5	0.2	-	100.0
인구	일수	821,111人	39,792,681	1,450,384	1,065,792	72,912	43,202,880	
%	1.9%	92.1	3.3	2.5		0.2	100.0	

〈출전〉 협회회 회원수는 『滿鮮日報』 1940년 1월 1일자, 2면; 인구는 大連商工會議所 編 『滿洲經濟統計年報』(昭和 16年), 1943, 6-7쪽, 『滿洲國人口(地方別)』에서 인용.

〈비고〉 협회회 회원수는 1939년 3월 말 통계이고, 인구는 1940년 10월 1일자 통계이다.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산간의 輿地에서 통신 및 교통 수단이 없이 생활하고 있던 조선 농민들은 ‘민족협화’ 운동의 취지를 인식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도 않았고 그들 또한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사료 11〉). 그들은 그저 「만주국」의 국민이라는 對目的인 인식 없이 하루하루 목숨만을 연명해 나가면 족한 것이었다.

이처럼 재만 조선인은 표면상 「만주국」 국민의 일원이었지만 그들이 끼어 들 수 있는 공간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결국 조선인들은 「만주국」에서 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일본의 후원 하에 중국인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2등 국민이 결코 아니었다. 재만 조선인은 중국인보다도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위상을 차지한 적이 결코 없었다. 그들에게는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만한 경제적富力, 정치적 권력도, 군사적 무력도, 사회적 평판도, 문화적 우월성도 없었다. 그들은 「만주국」에서 ‘위찮고 귀찮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다.

〈사료 12〉 “滿洲는 점점 滋味가 업서진다. 우리의 安住處는 아리가 될가.

아마도 在滿朝鮮人의 장래는 희망이 적다.” 이것이 都市人의 소위 識者階級에서 하는 말이다. “에서 일하면 무엇하나. 運命에 맞기고 爲先 잇는대로 먹고 쓰고 놀아보자.” 이것이 농촌 대중의 소위 自嘲자기에서 오는 悲鳴의一曲이다. …… 도시인은 살맛이 업스니 다시 安住處를 차즈려 하고 農村人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맞기고 월대로 되라는 비관론에 빠져있으니 과연 이것이 재만조선인의 장래에 대한 赤信號가 아니고 무엇인가. 그러면 이후 更生의 觀望과 希望의 熱意로 힘치게 되는데 百萬大衆이 一朝에 사라지면 崩潰과 飢饉이 시들어가는 원인이 奈邊에 잇는가. (治外法權撤廢, 教育權移管, 民會 기타 團體解散, 水田開墾取縮, 移民地區 撤換, 既耕地 買收 등등 接應하야 일어나는 新事態에 대응하야 警心차릴 여기도 업시 在滿朝鮮人과 지대한 關係를 가지고 잇는 米穀統制의 바람에 도시인은 거개 자미를 일케 되고 農村人은 매수가격의 大廉, 麻袋求得難, 運費大高, 賣渡手續 不圓滑 등등으로 직접 生活上 威脅을 맞게 되어 郵部를 물론하고 上記와 如한 적신호를 揭하게 된 것이다.⁴⁷⁾

〈사료 12〉에서 잘 드러나고 있듯이, 결국 재만 조선인은 도시인이건 농민이건 자포자기의 비관론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장래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1937년 12월 치외법권의 철폐와 더불어 教育權이 「만주국」 정부에 이관되고, 朝鮮人民會·農務契 등의 민족 권익 團體들의 解消 등 소수 민족으로서 누리고 있던 조그마한 특권마저 사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과 그에 따른 경제 통제 정책 등의 실시로 고물가 및 각종 물자의 품귀 현상과 더불어 재만 조선인의 水田開墾의 단속, 移民地區의 撤換, 既耕地의 買收가 취해지면서, 그들은 마치 ‘사리맛은 풀잎’처럼 시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재만 조선인은 「만주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중국 지방 당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 ‘중국인’으로서 혹은 ‘大日本 제국의 臣民’으로서 이

47) 夢庭生, 『鮮系輔導의 現實性—우선 民族別輔導機構를 整備하러』, 『滿鮮日報』 1940년 1월 5일자, 2면.

종의 법적 제한을 받으면서 이들 양자로부터 이용을 당하거나 배척·탄압을 받았다. 이때 조선인을 통한 일제의 만주 침략이 노골화되면서 제만 조신인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배척과 탄압은 심화되었고, 제만 조선인의 항일 투쟁은 중국 및 일본 모두로부터 혹독한 탄압을 받았다. 이 시기 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만주국』이 수립된 후 제만 조선인은 치외법권을 지닌 '제국의 신민'으로서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처럼 비쳐졌지만, 실제로는 대륙 침략을 위한 이용 가치가 상실되면서 열사나 받는 '허참고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제만 조선인의 위상에 그대로 반영되어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이다. 더욱이 형식적이나마 그들을 일본인(?)의 반열에 올려놓아 주고 있던 치외법권이 1937년 12월 철폐되기, 『滿洲國』으로 국적이 바뀐 제만 조선인들의 위상은, 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경멸과 비난이 가중되면서 더욱더 추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비록 공식적으로는 치외법권의 철폐를 전후로 일본인 또는 『만주국』 '민'으로 분류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심리적으로 일본이나 『만주국』을 자기의 구기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⁴⁸⁾ 그렇다고 그들의 조국이었던 조선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다. 바로 이점에서 그들의 정체성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이 안주할 곳은 아무 데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제국주의적 침략을 계기로 '다민족 국가'로 진화되었던 '대일본 제국'은 실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차별적 민족 질서를 그 근간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⁴⁹⁾ '대일본 제국'의 일원이었던 『만주국』 역시 국가 이념으로써 각 민족의 평등을 전제로 한 '민족협화'를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을 주도적인 민족으로 체현시킴으로써 민족 차별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민족협화' 운동과 더불어 國難上 '대일본 제

국'의 신민으로써 '內地人'(즉 일본인)과 허등의 차별 없이 그들과 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지위와 권리를 획득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통해 일본인의 차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했다. 그렇지만 제만 조선인은 배후에 주권을 지닌 조국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만주국』 수립 이전부터 '일제의 앞잡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고, 『만주국』의 정치·행정·경찰·사법 조직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극히 미미했기 때문에, 『만주국』 내에서 그들의 지주적 역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정치적 역할을 발휘할 수가 없었다. 이와 아울러 제만 조선인 대부분은 조선 땅에서조차 가난에 허덕이다가 渡滿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만주국』 내에서 경제적인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은 艱難하고라도 생존 자체마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령 제만 조선인이 '민족협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협회화 조직의 전체 구성원수 및 지도부에서 조선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협회화 조직 속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언어 역시 일본어와 중국어였기 때문에, 조선인은 언어상의 장벽을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만주국』의 민족 정책 역시 '민족협화'의 기치 하에서도 차별성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만 조선인은 '민족협화'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일본인 및 중국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족협화' 운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만주국』의 주요 구성원인 조선인에게 심한 소외감을 심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상술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식민지 민족의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 논리로써 『만주국』의 식민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등장한 '민족협화' 운동은, 적어도 제만 조선인의 민족적 위상과 그 속에서 표출되고 있던 정체성의 혼란상에서 보여지듯이, 차별적 민족 질서를 근간으로 한 제국주의적 식민주주의에 의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것은 『만주국』의 '민족협화' 운동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8) 한상복·권태환, 『중국 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3, 93쪽.

49) 尹健次 著, 鄭道永 譯, 『現代日本の 歴史意識』, 한길사, 1990, 175쪽.

II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民族協和) of 'Manchukuo, and Koreans in Manchuria

Yoon, Hwuy tak

Before 'Manchukuo, Koreans in Manchuria were legally double-restricted by Chinese local authorities as well as Japanese government. They exploited and ostracized Koreans. After invasion of Japanese into Manchuria, Chinese authorities oppressed Koreans, whom is suspected to be Japanese secret agents. Korean independent struggle was also repressed by Chinese and Japanese authorities at the same time.

After founding of 'Manchukuo, Koreans in Manchuria seemed to have extraterritoriality as 'subjects of the empire.' However, in fact, Koreans were treated as trivial people whom were useless any more for Japanese authorities. In 1937, as extraterritoriality of Koreans in Manchuria were abolished, they became people of 'Manchukuo. Koreans in Manchuria experienced identity crisis as either people of 'Manchukuo, nor Japanese.

'The Great Empire of Japanese', transformed into multinational state by imperial invasions, had discriminatory and hierarchal coercion over nationalities. Although 'Manchukuo, had ideology of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民族協和), it treated Japanese as superior nationality.

Koreans in Manchuria wanted to have equal rights with Japanese. However as Koreans did not have their own government and were treated as Japanese secret agents, they failed to have appropriate political power of 'Manchukuo. They were even hard to survive because of their bad economic condition as immigrants.

Koreans in Manchuria had difficulties in participating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 committee because of language barrier and small portion of their

political rights. In addition, the committee retained its discriminatory policy. Therefore, Koreans in Manchuria were alienated. It also denoted failure of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

In conclusion,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 as counter ideology toward colonial nationalism was, in reality, imperialistic discrimination over nationalities. As we saw identity crisis and national deprivation of Koreans in Manchuria, 'Cooperation and Harmony among nationalities' has failed.